

[공고번호 제2024-099호]

「2024 웹툰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」 선택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웹툰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센터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6월 13일
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

1. 모집개요

- 공 고 명 : 웹툰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- 사업기간 : 2024. 7. ~ 12.
- 사업대상 : 센터 기 입주자 및 콘텐츠 분야 (예비)1인 창조기업
 - ※ 1인 창조기업의 정의는 하단 [별표1] 확인.
 - ※ 선택형 지원사업 참여자는 센터 입주 필수 (센터 위치 :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지하 1층)
 - ※ (예비) 창업자 지원 가능. 단,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
- 대상인원 : 4개 기업
- 입주기간: 2024. 7 20~ 2025. 4. 30.(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입주 가능)
- 지원예산 : 금30,000,000원(금삼천만원) ※ 기업당 최대 3,000,000원 지원
 - ※ 선입주 개시 후 1개월 이내 입주 포기 및 퇴소자 발생 시, 차점자 추가 선발

2. 지원내용

- 선택형 지원사업

구 분	지원내용	지원규모
시제품 제작	상품 샘플 및 판매품 제작	1개 기업당 최대 300만원 4개 기업 지원
홍보	홍보물·홍보영상(숏폼)제작/브로슈어제작	
지식재산권	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	
상품 홍보 활성화	전시 전문 카페 등 대관 지원	
IP의 다양한 활용	IP 낭독회 지원	

- 입주지원
 - 집중석/개방석 中 택1
(상황에 따라 임의 배정 가능)
- 전시 홍보부스 참가 지원
- 부천국제만화축제 참가지원
 - 2024 BICOFF 전시 지원
 - 일정/장소: 2024. 10. 한국만화영상진흥원
- 센터 주최 특강 및 간담회,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 참여
 - 1인 창조기업 공동프로그램 필수 참여(브릿지 센터 및 타 센터 프로그램)
 - 창업 관련 전문가 특강
 - 상품 기획 및 전시회/비즈니스 상담/ 멘토링 / 특강 등
- 본 센터의 주소로 입주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가능
 - 퇴거 후 주소 수정 필
-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
- 진흥원 및 창업진흥원 창업·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
- 공용장비(PC) 및 사물함 무상 이용

3. 지원금 지급

- 지급시기
 - 사업진행 중 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용역업체로 지급
(지원기업 직접 지급 불가)
- 증빙서류
 - 용역 수행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미지급
 - 세금계산서(신용카드 영수증), 계약서, 과업지시서, 결과보고서, 검수조서
(증빙사진 포함)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, 거래처 통장사본, 선급금이행보증보험
(필요시 각서대체, 필요시) 등
- ※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- 사용제한
 - 지원금 집행 시, 지원내용 (시제품제작/홍보/지식재산권/상품홍보활성화/IP
다양한 활용)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
 - 지원내용 이외의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, 인건비, 수수료, 여비, 자산취

- 특비, 회계기장비 등 사용 불가
- 부가세 지원기업 자부담
- ※ 위 사항 미 이행시 환수조치 가능성 있음

4. 지원제한

- 3년 이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불가
- 창업진흥원 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의 경우 타 센터의 입주기간과 본원의 예상 입주기간의 합이 2년 이내여야 함
-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 (직장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)
- ※ 사업기간 중 자격 유지해야 함.
- 타 지원센터 입주자도 지원가능
(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/창작스튜디오 입주자/웹툰융합센터 입주자)
- 전년도 선정과제 중복 지원 불가(같은 작품이여도 산출물이 다르면 지원 가능)
- 동일과제 타 기관 지원사업 수혜 시 지원 불가(같은 작품이여도 산출물이 다르면 지원 가능)
- 성인 등급 작품은 지원사업 지원 불가(입주는 가능)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「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」 제10조(지원사업 참가기준) 등에 따른 제외 대상

- 신청일 현재 지원자(주관 및 참여사 또는 개인)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. 다만 지원금이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우리원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
- 3년 간 전문기관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지원자(주관사 및 참여사 또는 개인)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,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(주관사 및 참여사 또는 개인) 또는 대표자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지원자(주관사, 참여사 또는 개인)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납부하지 않은 기술료가 있는 경우
-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·훼손하는 경우

※ 중복지원 참조

2023 지원작품	2023 산출물	2024 산출물	지원여부
허생전	가방	가방	불가
허생전	가방	머그컵	가능

5. 의무사항

-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
- 상품화 사업 지원자는 입주 필수
- 창업지원포털(k-startup) 회원가입 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회원 인증 필수
- 선급금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(자부담)
- 성폭력예방, 표준계약서 교육 각1회 참여 필수
- 진흥원 주관 협약식 필참(세부일자 추후 안내)
- 만화인 업데이트 및 창업진흥원 교육 1회 이상 이수
- 본원 및 창업진흥원 만족도 조사에 응하여야 함
- 매출 등 사업실적자료 조사에 입주 졸업 3년 후 까지 응하여야 함
 - 조사된 자료는 사업평가 목적으로만 이용됨
- 중간점검에 응하여야 함
- 완료평가 시 사업결과물 제출

6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보조금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및 중소벤처기업부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」, 그리고 우리원의 「지원사업 운영 관리규정 및 규칙」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- 지원사업비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금. 인건비, 수수료 납부 불가
- 공개 및 계약되어 연재중인 작품도 지원 가능
- 공동 IP의 경우 권리관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, 진흥원은 이에 책임지지 않음
- 사업 운영지침,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기술료 환수대상 아님
-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하며, 공동저작 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로 결정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창업진흥원은 사업홍보 및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
- 위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 당사자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.
- 완료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됨.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. (같은 작품이어도 산출물이 다르다면 지원 가능)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7. 사업추진절차

단 계	수 행 내 용	비 고
2024. 7. 협약식	■ 지원사업 협약식	필 참
↓		
2024. 7.-10. 지원사업 진행	■ 용역완료시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업체 지원금 지급	증빙서류제출 직접지급불가
↓		
2024. 7.-10. 창업특강	■ 전문가 창업 특강 ■ 간담회	기업간 커뮤니케이션
↓		
2024. 7.-10. 공동프로그램 참가	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공동 프로그램 및 브릿지 센터 프로그램 참가	필 참
↓		
2024. 7-8 중간점검	■ 지원사업 진행도 체크	실적자료준비 상품준비
↓		
2024. 10 부천국제 만화축제	■ 프리마켓, 비즈니스 상담	상품준비 상담준비
↓		
2024. 11 완료평가	■ 결과물 완료평가 심사	결과물 준비 완료보고서 작성
↓		
2024. 10-11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	■ 상품전시회, 발표회. 비즈니스 상담	상품준비 상담준비

8. 평가절차

○ 선정평가

- 외부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 심사
 - 평가는 최고점,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낸 평균점수
 -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 및 완료평가 진행
 - 선정평가 전까지 담당자 안내에 따라 개별 발표 PPT 제작 및 제출
- ※접수 마감 후, 개별 안내 예정

※진흥원 방문 대면 발표 필수

- 평가기준

평가항목	평가기준 세부내용	배점
창업자 역량	•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	30점
	•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	
사업계획의 적정성	•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	20점
	• 기술(제품)의 차별성	
기술성	• 기술(제품)이 미치는 파급효과	20점
	• 기술구현의 현실성	
시장성	•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	20점
	•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	
기타	•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	10점
	•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	
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* 수상 증빙자료 제출 •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• 재창업기업(폐업사실확인서 제출必, 성실경영평가 통과자(1점)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(3점)) 	최대3점 각 1점

○ 완료평가(지원사업만 해당)

평가항목	심사기준 세부내용	배점
계		100(5)
성실성	▪ 수행계획서 상의 수행내용 이행 현황	40
	▪ 결과보고서의 성실성	
	▪ 의무사항 이행 정도	
완성도	▪ 과제의 완성도	40
	▪ 과제의 우수성 및 흥미성	
발전도	▪ 기획력, 창작능력, 과제 결과물의 발전 및 성장정도	20
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브릿지센터 프로그램 참여자(2점) ▪ 창업지원사업 연계 수혜자(2점) ▪ 지식재산권 인증성과자(1점) 	최대5점

8. 추진일정

○ 접수기간 : 2024. 6. 13.(목)부터 ~ 7. 5.(금) 15:00까지

○ 심사일정 : 2024. 7. 10.(수) 발표심사(예정)

○ 협약일정 : 2024. 7. 22.(월)(예정)

*심사 및 협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9. 신청방법

- 접수방법 : [우리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\(http://pms.komacn.kr/\)](http://pms.komacn.kr/)을 통한 온라인 신청
 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omacn.kr>)접속, 지원·공모에서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
 -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가능
 -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접수(파일업로드)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므로, 마감일 1일 전까지 제출 권장
- 제출서류 : 선택형신청서(사업신청서, 수행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붙임 문서 참조)
 - 신규 입주 지원의 경우 : 입주 신청서 작성
 - 연장 입주 지원의 경우 : 연장 신청서 작성
 - 선택형 지원의 경우 : 입주형태에 관계없이 선택형 신청서만 작성

※ “지원서 작성 및 접수 안내” 파일 참조

【신청서 유의사항】

- 사업 신청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수마감 당일에는 트래픽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,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제출을 권장합니다.

10. 문 의

-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융복합사업팀
김경림 매니저 ☎ 032)310-3182 / E-mail: kkr@komacn.kr

[별표 1] 1인 창조기업의 범위

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

□ (정의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* 관련법령 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

○ (유예기간)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
* (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)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광 업	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	05
	금속광업	06
	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	07
	광업지원서비스업	08
제조업	담배제조업	12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1차 금속 제조업	24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35
	수도사업	36
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37
	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	38
	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건설업	종합건설업	41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	전문직별 공사업	42
도매 및 소매업	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	45
	도매 및 상품중개업	46
	소매업;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	47
운수업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	49
	수상 운송업	50
	항공 운송업	51
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숙박 및 음식점업	숙박업	55
	음식점 및 주점업	56
금융 및 보험업	금융업	64
	보험 및 연금업	65
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66
부동산업 및 임대업	부동산업	68
	임대업; 부동산 제외	69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보건업	86
	사회복지 서비스업	87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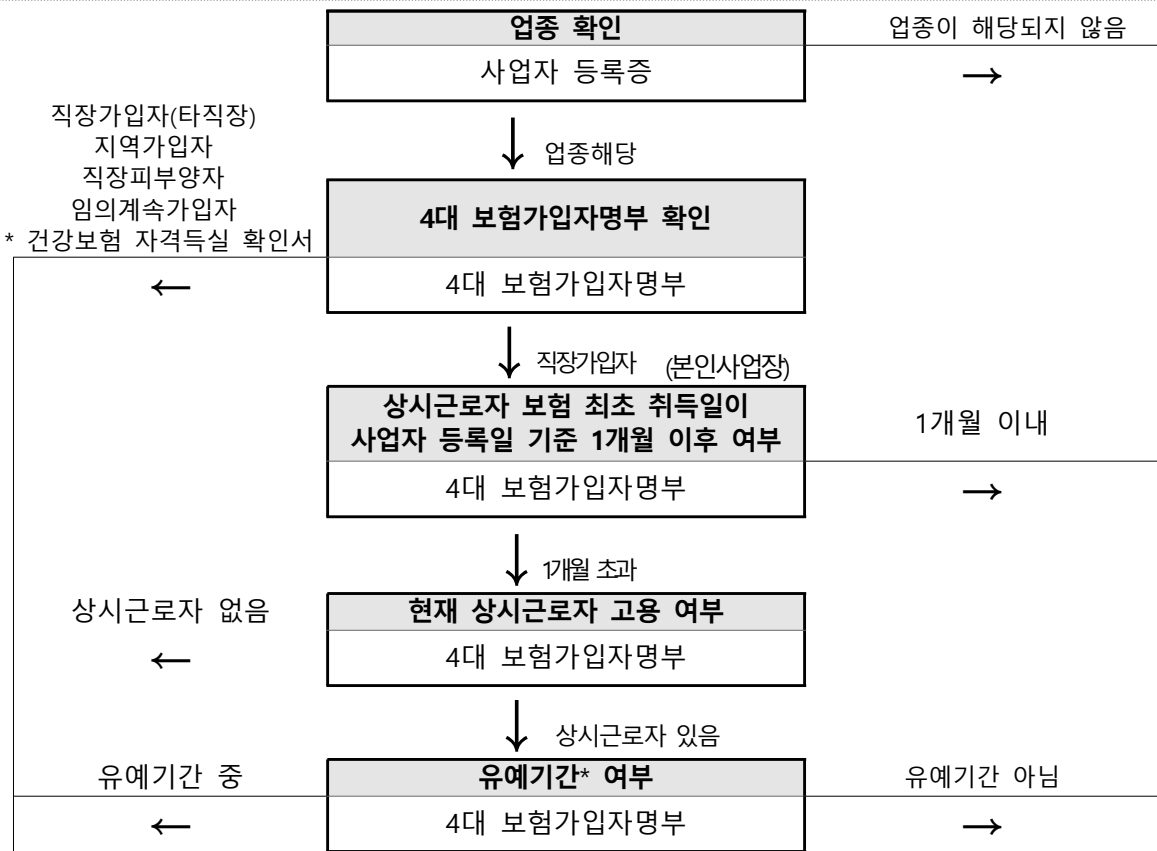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(1자리 코드), 중분류(2자리 코드), 소분류(3자리 코드), 세분류(4자리 코드), 세세분류(5자리 코드)로 구성되며,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"05(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)"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

[별표 2]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- ◆ **업종 확인** :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,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
 - *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
- ◆ **상시근로자 확인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,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
 - * 직장가입자(타직장),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, 직장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 등
- ◆ **유예기간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- *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

<준비서류>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



※ 유예기간 판단 참고

1. **유예기간** :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임
2. **유예기간 종료 후** :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,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,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
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. 다만, '18.3.1~'18.3.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, '18.4.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, 재유예기간은 '18.4.1~'21.12.31까지임

지원대상

지원대상 아님